



금융감독원

# 보도자료



금융은 튼튼하게



소비자는 행복하게

|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보고   | 2022.8.5.(금) 석간    | 배포  | 2022.8.4.(목) |                    |
| 담당부서 | 자본시장감독국<br>파생상품시장팀 | 책임자 | 팀장           | 장재훈 (02-3145-7600) |
|      |                    | 담당자 | 조사역          | 강성동 (02-3145-7603) |

##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 금융회사

- '22.9월부터 비청산 장외파생거래에 대한 개시증거금 교환제도가 거래잔액이 10조원 이상인 회사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
  - '22.9월부터 1년간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이 되는 회사 수는 총 121개 사로, 전년(72개 사, 잔액 70조원 이상) 대비 49개 증가

### 1. 증거금 교환제도 개요

- 중앙청산소(CCP)에서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해 거래당사자간 증거금\*(담보)을 사전에 교환하도록 하는 제도로,
  - \* 증거금은 개시 및 변동증거금으로 구분되며, 개시증거금은 거래시점에 거래상대방의 미래의 부도 위험을, 변동증거금은 일일 익스포저를 관리하기 위해 교환하는 담보
- 장외파생거래에 따른 시스템리스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「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가이드라인」을 '17.3월부터 시행

### 증거금 제도의 주요 내용

| 구분     | 변동증거금        | 개시증거금          |
|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기본 개념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
| 교환시기   | 매일           | 거래 개시 시점       |
| 계산     | 시가 평가        | 표준모형 또는 내부계량모형 |
| 교환방식   | 상계에 따른 순액 교환 | 총액 교환(상계X)     |
| 면제한도   | 없음           | 최대 650억원       |
| 담보관리   | 개별관리         | 제3의 보관기관       |
| 담보 재사용 | 재사용 가능       | 재사용 금지         |

## 2. 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

- (대상상품) 중앙청산소에서 청산되지 않는 모든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에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,
  - 실물로 결제되는 외환(FX)선도·스왑, 통화스왑(CRS), 실물결제 상품선도거래 등에 대해서는 적용 제외
- (대상기관) 매년 3·4·5월말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명목잔액의 평균이 기준금액 이상인 금융회사\*에 대해 당해 9.1.부터 1년간 적용 예정이며,
  - \*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업 인허가를 받은 회사 중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인 회사
  - 금융그룹\*에 소속된 금융회사의 경우, 동일 금융그룹 내 모든 금융회사의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명목잔액을 합산하여 판단
    - \* 「공정거래법」상 계열사 중 금융회사, 「금융지주회사법」상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

### 증거금 교환제도 적용 일정

| 구분     | 시행일       | 적용 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변동 증거금 | '17.3.1.~ |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잔액이 10조원 이상인 대상기관    |
|        | '17.9.1.~ |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잔액이 3조원 이상인 대상기관     |
| 개시 증거금 | '17.9.1.~ |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잔액이 3,000조원 이상인 대상기관 |
|        | ∴         | 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| '21.9.1.~ |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잔액이 70조원 이상인 대상기관    |
|        | '22.9.1.~ |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잔액이 10조원 이상인 대상기관    |

- (적용제외기관) 금융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회사와 중앙은행, 공공기관 또는 BIS 등 국제기구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,
    - 자산운용사는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나, 집합투자기구·은행 등의 신탁계정 및 전업카드사에는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지 않음
- ※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용제외 상품, 적용 제외기관이라도 거래당사자간 합의로 증거금을 교환할 수 있음

### 3. 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 금융회사(예정)

#### 1 변동증거금

- '22.9월부터 1년간 변동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인 금융회사는 총 158개 사이며, 그 중 금융그룹 소속 금융회사는 129개 사

#### 변동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 금융회사 현황('22.9월 적용 기준)

(단위 : 개)

| 구분  | 3조원 이상<br>10조원 미만 |           | 10조원 이상<br>100조원 미만 |           | 100조원 이상<br>200조원 미만 |           | 200조원 이상<br>300조원 미만 |           | 300조원 이상 |           | 총합계      |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|
|     | 금융<br>그룹          | 금융<br>그룹X | 금융<br>그룹            | 금융<br>그룹X | 금융<br>그룹             | 금융<br>그룹X | 금융<br>그룹             | 금융<br>그룹X | 금융<br>그룹 | 금융<br>그룹X | 금융<br>그룹 | 금융<br>그룹X |
| 은행  | 3                 | 1         | 1                   | 8         | 1                    | 4         | 4                    | 3         | 3        | 6         | 12       | 22        |
| 증권  | 15                | 2         | 29                  | 0         | 2                    | 0         | 10                   | 1         | 5        | 0         | 61       | 3         |
| 보험  | 4                 | 4         | 13                  | 0         | 1                    | 0         | 4                    | 0         | 3        | 0         | 25       | 4         |
| 기타* | 8                 | 0         | 10                  | 0         | 2                    | 0         | 9                    | 0         | 2        | 0         | 31       | 0         |
| 총합계 | 30                | 7         | 53                  | 8         | 6                    | 4         | 27                   | 4         | 13       | 6         | 129      | 29        |

\* 금융지주사, 저축은행, 신용정보사 등 포함

#### 2 개시증거금

- '22.9월부터 1년간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인 금융회사는 총 121개 사이며, 그 중 금융그룹 소속 금융회사는 99개 사
  -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명목잔액이 10조원 이상 70조원 미만인 금융회사는 총 43개 사이며, 전체 적용대상 회사의 35.5% 수준

####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 금융회사 현황('22.9월 적용 기준)

(단위 : 개)

| 구분  | 10조원 이상<br>70조원 미만 |           | 70조원 이상<br>100조원 미만 |           | 100조원 이상<br>200조원 미만 |           | 200조원 이상<br>300조원 미만 |           | 300조원 이상 |           | 총합계      |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|
|     | 금융<br>그룹           | 금융<br>그룹X | 금융<br>그룹            | 금융<br>그룹X | 금융<br>그룹             | 금융<br>그룹X | 금융<br>그룹             | 금융<br>그룹X | 금융<br>그룹 | 금융<br>그룹X | 금융<br>그룹 | 금융<br>그룹X |
| 은행  | 0                  | 5         | 1                   | 3         | 1                    | 4         | 4                    | 3         | 3        | 6         | 9        | 21        |
| 증권  | 21                 | 0         | 8                   | 0         | 2                    | 0         | 10                   | 1         | 5        | 0         | 46       | 1         |
| 보험  | 9                  | 0         | 4                   | 0         | 1                    | 0         | 4                    | 0         | 3        | 0         | 21       | 0         |
| 기타* | 8                  | 0         | 2                   | 0         | 2                    | 0         | 9                    | 0         | 2        | 0         | 23       | 0         |
| 총합계 | 38                 | 5         | 15                  | 3         | 6                    | 4         | 27                   | 4         | 13       | 6         | 99       | 22        |

\* 금융지주사, 저축은행, 신용정보사 등 포함

□ '22.9월부터 개시증거금 교환제도가 적용되는 금융회사 수(121개)는 전년 적용대상 금융회사 수(72개) 대비 49개 증가하였으며,

- 키움증권 등 총 51개 사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신규적용하고, 2개 사\*는 이번 적용대상에서 제외(☞ 적용대상회사목록 붙임)

\* '21년 중 '신한생명'과 '오렌지라이프생명'이 '신한라이프생명'으로 합병되어 적용대상 수 감소

###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 비교

(단위 : 개)

| 구분  | '21.9~'22.8 적용대상회사 |        |    | '22.9~'23.8 적용대상회사 |        |     | 전년 대비 변동 |        |    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|----------|--------|-----|
|     | 금융 그룹              | 금융 그룹X | 전체 | 금융 그룹              | 금융 그룹X | 전체  | 금융 그룹    | 금융 그룹X | 전체  |
| 은행  | 9                  | 16     | 25 | 9                  | 21     | 30  | -        | +5     | +5  |
| 증권  | 20                 | 1      | 21 | 46                 | 1      | 47  | +26      | -      | +26 |
| 보험  | 11                 | 0      | 11 | 21                 | 0      | 21  | +10      | -      | +10 |
| 기타* | 15                 | 0      | 15 | 23                 | 0      | 23  | +8       | -      | +8  |
| 총합계 | 55                 | 17     | 72 | 99                 | 22     | 121 | +44      | +5     | +49 |

\* 금융지주사, 저축은행, 신용정보사 등 포함

## 4. 향후계획

□ 개시증거금 제도가 확대 시행('22.9월)될 예정으로, 기존 제도 시행의 경과와 신규 적용 금융회사의 제도 시행과정 등을 모니터링할 예정

□ 개시증거금 관련 담보관리 시스템 구축 및 계약 체결 프로세스 마련 등 금융회사의 제도 시행과정\*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,

\* 표준모형 등을 이용한 개시증거금의 계산과 증거금으로 교환하는 담보의 관리방안 등을 위해 내부 관리 체계 및 관련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

- 증거금제도 준수와 관련한 금융회사의 애로사항 등을 수렴하여 동 제도가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

※ 「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 제도 가이드라인」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([www.fss.or.kr](http://www.fss.or.kr) 법규정보-금융행정지도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<http://www.fss.or.kr>)

# 붙임1 증거금제도 도입 경과 및 주요 내용

## 1 BCBS-IOSCO 증거금 규제안 발표\* ('15.3.)

\* Margin Requirements for non-centrally cleared derivatives

## 2 증거금제도 국내 도입

- **(계획)** 금융위(자본시장과) 및 기재부(국제금융정책국)와 증거금 제도 내용 및 제도 도입 계획 논의('16.5.)
- **(준비)** 해외 각국 증거금 규제 도입 현황 파악 및 제도 도입에 따른 애로사항 등 업계 의견청취 간담회 개최('16.6.)
- **(TF초안)** TF(거래소, 예탁원, 20여개 은행·증권사)는 해외사례 조사 및 이슈사항 검토 후 가이드라인 초안 마련('16.8.~11.)
- **(행정지도)** 가이드라인의 행정지도 예고('16.12.) 후, 최종안을 금융감독 행정규제심의위원회 부의('17.2.24., '17.3.1. 시행)

## 3 증거금제도 일부 변경

- **(비조치의견서)**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하여 커버드본드 스왑 거래('17.8.) 및 전업카드사 업권('17.11.)의 적용을 배제
- **(이행시기 변경)** 금융회사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개시증거금 교환제도의 시행시기를 두 차례 연기\*하기로 결정

\* 중소형금융사의 규제준수 부담을 고려하여 거래규모에 따라 이행시기를 차등화('19.7.)하고, 코로나19로 인한 금융회사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제도시행 시기를 1년 연기('20.5.)

| < 기존 >  |           | < '19.7.이후 >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< '20.5.이후 >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거래규모    | 적용시기      | 거래규모               | 적용시기                   | 거래규모               | 적용시기                   |
| 10조원 이상 | '20.9.1.~ | 70조원 이상<br>10조원 이상 | '20.9.1.~<br>'21.9.1.~ | 70조원 이상<br>10조원 이상 | '21.9.1.~<br>'22.9.1.~ |

|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| 금융그룹 소속 금융회사<br>(금융그룹 전체 잔액 합산 기준)  |    | 금융그룹 소속 아닌<br>금융회사  |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|---|----|
| 10조원<br>이상<br>70조원<br>미만   | 한국투자금융지주, 한국투자증권, 한국투자저축은행, 한국<br>투자부동산신탁, 한국투자신탁운용,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,<br><b>메리츠금융지주, 메리츠증권, 메리츠화재, 메리츠자산운용,</b><br><b>미래에셋증권, 미래에셋생명, 미래에셋자산운용, 멀티에셋</b><br>자산운용,<br><b>교보증권, 교보생명,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, 교보악사자산</b><br>운용, <b>교보자산신탁</b><br><b>한화투자증권, 한화생명, 한화손해보험, 캐롯손해보험, 한화</b><br>자산운용, <b>한화저축은행,</b><br><b>DB금융투자, DB생명, DB손해보험, DB자산운용, DB저축은행,</b><br><b>대신증권, 대신자산운용, 대신저축은행, 대신자산신탁</b><br><b>키움증권, 키움저축은행, 키움투자자산운용, 키움에스저축</b><br>은행 | 38 | 미쓰이스미토모은행,<br>대화(UOB)은행,<br>한국수출입은행,<br>OCBC은행,<br>뉴욕멜론은행                   | 5  |
| 70조원<br>이상<br>100조원<br>미만  | <b>NH농협금융지주, NH농협은행, NH투자증권, NH농협</b><br>생명, <b>NH농협손해보험, NH-Amundi자산운용, NH저축</b><br>은행, <b>NH선물</b><br><b>삼성증권, 삼성생명, 삼성화재, 삼성선물, 삼성자산운용,</b><br><b>삼성액티브자산운용, 삼성에스알에이자산운용,</b>  | 15 | 스테이트스트리트은행,<br>엠유에프지은행,<br>호주뉴질랜드은행   | 3  |
| 100조원<br>이상<br>200조원<br>미만 | <b>IBK기업은행, IBK투자증권, IBK연금보험, IBK저축은행,</b><br><b>IBK자산운용, IBK신용정보</b>   | 6  | ING은행,<br>모간스탠리은행,<br>DBS은행,<br>미즈호은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4  |
| 200조원<br>이상<br>300조원<br>미만 | <b>우리금융지주, 우리은행, 우리종합금융, 우리신용정보,</b><br><b>우리자산신탁, 우리자산운용, 우리글로벌자산운용, 우리</b><br><b>금융저축은행,</b><br><b>신한금융지주, 신한은행, 신한금융투자, 신한라이프생명,</b><br><b>제주은행, 신한자산운용, 신한신용정보, 신한저축은행,</b><br><b>아시아신탁,</b><br><b>KB금융지주, KB국민은행, KB증권, KB생명, 푸르덴셜생명,</b><br><b>KB손해보험, KB자산운용, KB저축은행, KB부동산신탁,</b><br><b>KB신용정보</b>  | 27 | 크레디아그리콜은행,<br>홍콩상하이은행,<br>크레디트스위스은행,<br>노무라금융투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4  |
| 300조원<br>이상                | <b>하나금융지주, 하나은행, 하나증권, 하나생명, 하나손해보험,</b><br><b>하나자산신탁, 하나저축은행,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,</b><br><b>KDB산업은행, KDB생명, KDB인프라자산운용,</b><br><b>한국SC은행, 한국SC증권</b>   | 13 | 제이피모건체이스은행,<br>한국씨티은행,<br>도이치은행,<br>BNP파리바은행,<br>بانک오브아메리카은행,<br>소시에테제네랄은행 | 6  |
| 총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| -   | 99 | -   | 22 |

※ 금융회사가 속한 국가의 상계계약 허용 여부, 금융그룹 소속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

**붙임3**

**'21.9월~'22.8월 기간 중 개시증거금 적용대상 금융회사**

|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| 금융그룹 소속 금융회사<br>(금융그룹 전체 잔액 합산 기준)   |    | 금융그룹 소속 아닌 금융회사  |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|--|----|
| 70조원<br>이상<br>100조원<br>미만  | NH농협금융지주, NH농협은행,<br>NH투자증권, NH농협생명, NH농협<br>손해보험, NH-Amundi자산운용,<br>NH저축은행, NH선물  | 8  | ING은행,<br>스테이트스트리트은행,<br>엠유에프지은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  |
| 100조원<br>이상<br>200조원<br>미만 | IBK기업은행, IBK투자증권, IBK연금<br>보험, IBK저축은행, IBK자산운용,<br>IBK신용정보  | 6  | 홍콩상하이은행, 크레디트스위스<br>은행, 모간스탠리은행, DBS은행,<br>미즈호은행, 호주뉴질랜드은행 | 6  |
| 200조원<br>이상<br>300조원<br>미만 | 우리금융지주, 우리은행, 우리종<br>합금융, 우리신용정보, 우리자산<br>신탁, 우리자산운용, 우리글로벌자<br>산운용, 우리금융저축은행,<br>신한금융지주, 신한은행, 신한금<br>용투자, 신한생명, 오렌지라이프<br>생명, 제주은행, 신한자산운용, 신<br>한신용정보, 신한저축은행, 아시아<br>신탁,<br>KB금융지주, KB국민은행, KB증<br>권, KB생명, 푸르덴셜생명, KB손<br>해보험, KB자산운용, KB저축은행,<br>KB부동산신탁, KB신용정보 | 28 | 소시에테제네랄은행,<br>크레디아그리콜은행,<br>노무라금융투자                        | 3  |
| 300조원<br>이상<br>400조원<br>미만 | 하나금융지주, 하나은행, 하나금융<br>투자, 하나생명, 하나손해보험, 하<br>나자산신탁, 하나저축은행, 하나<br>대체투자자산운용,<br>KDB산업은행, KDB생명, KDB인프<br>라자산운용  | 11 | 제이피모건체이스은행,<br>한국씨티은행,<br>도이치은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  |
| 400조원<br>이상                | 한국SC은행, 한국SC증권   | 2  | BNP파리바은행,<br>뱅크오브아메리카은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  |
| 총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| -  | 55 | -  | 17 |